

도시관리계획(월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월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전화 440-4625), 중구청 도시녹색과(전화 760-751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1.10.04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계획취지 : 도시관리계획(월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변경결정
2. 위 치 :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-53번지 일원
3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

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사항

1.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기 정		
			기 정	변 경	변경후
-	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	중구 북성동1가 98-53번지 일원	262,320.7	감) 2.8	262,317.9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)	변경사유
변경	-	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	중구 북성동1가 98-53번지 일원	262,317.9	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따른 변경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기 정				변 경							
		가구면적 ()	획 지		비 고		가구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		
			위치	면적(㎡)	1단계	2단계		위치	면적(㎡)	1단계	2단계		
2-3-1	2-3-1	12,700.4	98-241	166.4	공동개발 권장	특별계획 구역 공동개발 권장	12,697.4	98-241	531.4	공동개발 권장	특별계획 구역 공동개발 권장		
			98-448	149.7								98-424	163.8
			98-543	111.2								98-449	194.5
			98-544	106.9								98-540	114.7
			98-424	163.8								98-541	101.2
			98-449	194.5								98-542	99.9
			98-540	114.7								98-545	110.2
			98-541	101.2								98-546	127.4
			98-542	99.9								98-242	586.6
			98-545	110.2								98-533	500.4
			98-546	127.4								98-534	333.0
			98-242	586.6	공동 개발 권장	특별계획 구역 공동개발 권장		98-451	301.8				
			98-242	586.6				98-452	150.8				
			98-533	500.4				98-453	104.1				
			98-534	333.0				98-454	281.8				
			98-451	301.8				98-455	154.6				
			98-452	150.8				98-456	143.8				
			98-453	104.1				98-457	142.0				
			98-454	281.8				98-458	140.8				
			98-455	154.6				98-459	138.8				
			98-456	143.8				98-460	136.8				
			98-457	142.0				98-461	99.1				
			98-458	140.8	98-462	101.2							
			98-459	138.8	98-268	333.1							
			98-460	136.8	98-269	204.8							
			98-461	99.1	98-59	345.0							
			98-462	101.2									
			98-268	333.1									
98-269	204.8												
98-59	345.0												

■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위 치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-3-1	2-3-1	98-241	•가구 12,700.4㎡ → 12,697.6㎡(감 2.8㎡)	•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따른 변경 (534.2㎡ → 531.4㎡, 감 2.8㎡) •연접해있는 획지를 1개의 획지로 합병하여 건축계획 수립
		98-448	•획지	
		98-543	98-241(166.4㎡)	
		98-544	98-448(149.7㎡) → 98-241(531.4㎡) 98-543(111.2㎡) 98-544(106.9㎡)	
		98-533	•획지 : 98-533, 98-534 → 98-533	

4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. 차량 동선에 관한 계획

구분	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기정	2-3-1	98-533	차량출입불허구간	• 주요 보조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
변경	2-3-1	98-533	차량출입불허구간	• 주요 보조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(획지 98-533 차량출입구 6m 제외)

나. 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 계획

구분	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기정	2-3-1	-	•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	•필지별 개발시 또는 공동개발시 주차장 진출입 공간을 공동으로 설치
변경	2-3-1	98-533	•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	•필지별 개발시 또는 공동개발시 주차장 진출입 공간을 공동으로 설치 •인접된 필지의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 결정

4. 지형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: 시보게재 생략)